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동차반 강의계획서

강의 일정

일 자 : 6.4(목) ~ 7.24(목), 매주 목요일
 시 간 : 저녁 6:30 ~ 10:00
 강의장소 : 프라임 신관 3층

강의 교재

- 입문용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집 (진도별 프린트제공)

강사 특징

-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고득점자
 - 노무사 수험생 출신이 할 수 있는 친절한 강의
 - 노동법적 베이스를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의 어려운 핵심 법리를 쉽게 이해합니다.
 - 도표와 Mapping, 비유법을 통하여 법리 파악을 돕습니다.
- ** 최대한 수험생의 호흡에 맞춰 강의하지만,
 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가까우므로 진입 당시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의 Target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GS 0기를 수강하신 바 있고, 올해 시험에서 승부를 보실 계획이라면 GS 1기를 빠르게 인강으로 수강하신 뒤, GS 3기를 수강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지금이 민법 감각이 가장 좋을 시기 - 소송법 핵심 법리 이해의 골든타임
 -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의 모법이고, ① 동일소송의 법리 ② 병합소송의 법리와 같은 핵심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민법 감각이 가장 좋을 시기인 1차시험 직후 민사소송법 핵심법리를 파악해 두면, 앞으로 할 공부의 분량이 줄어들고 덜 헤메이게 됩니다.

강의특징

I. 절차법에 맞는 공부방식으로 친절하게

- 노동법이 100개의 판례를 자세히 암기, 현출, 적용하는 형태라면 민사소송법은 400개의 판례의 결론을 숙지하고 정확히 교통정리해나가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 초반의 소송법 공부가 가지는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넘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민사소송법 사례 답안을 예쁘게 쓰는 수험생들은 다른 시험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적는 응시자가 득점합니다

II. PPT 수업

- 소송법의 법리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기판력

판결(엄마의 명령): "철수는 백수니까(이유), 너(딸)는 철수를 만나지 마라(주문)."
 확정 시점(변론종결): 2024년 12월 31일 저녁 식사 시간.

구분	딸의 반응	기판력 적용여부
1. 객관적 범위 동일소송물 (주문으로 판단)	철수가 아니라 영수를 만나고있다고요!	X 그래, 영수는 어떤 애냐
	철수와 만났게 아니라 전화통화만 한거라고요!!	X 그래, '만나지 마라'고 했지 전화하지 말라곤 안 했다 (소송물 다름)
2. 시적 범위 사실심변론종결시 (차단효)	엄마, 그건 작년(12/31) 얘기고! 한달 전에 철수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구요!!	X 어? 그건 내가 명령할 때(변론종결 전) 없던 사실이네?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엄마, 사실 철수가 그냥 백수는 아니고 고시공부를 하고있었다고요!	O 그때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뒷북이야? 안 받아준다
3. 주관적 범위 당사자동일	엄마, 내가 철수를 만나게 아니라 사촌 영희가 철수를 만나는거라고요	X 그래 네가 안 만나는거면 되었다.

- 도표의 사용을 통해 암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소송 요건	직권조사 사항여부	자료수집 방법	판결효력	간과판결구제방안
소의이익	O	O	직권조사	유효	상소(재심x)
처분권주의	-	-	-	유효	상소(재심x)
변론주의	-	-	-	유효	상소(재심X)
민사재판권	O	O	직권탐지	무효	- (판결이 무효)
전속관할	O	O	직권탐지	유효	상소, 재심
임의관할	O	O	변론주의	유효	X (하자치유)
제적사유간과	-	O	직권탐지	유효	상고(절대적상고이유) 재심
기피신청간과	-	O	직권탐지	유효	상고(절대적상고이유) 재심

II. 주교재 - 입문용 민사소송법 단문/사례

- 민사소송법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진도별 프린트로 배포합니다.

- 민사소송법의 최고 득점포인트는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 미니사례를 숙제로 드리고 강사가 직접 피드백합니다 (시험 없음)

사례3

적법하게 판결에 의하여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다시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丁과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서면이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의 사실심 심리 중 甲은 丁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수소법원은 증서진부확인 소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

쟁점

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각각 증서진부확인 소의 청구적격을 충족하는지 ②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서의 진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소가 제기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한지

해설

- ① **[청구적격]** (i) 매매계약서는 매매 계약 관계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청구 적격 인정 (ii) 영수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등 법률 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가 직접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적격 부정
- ② **[확인의 이익]** 진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후 증서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진부 확인의 소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지 않음
- ③ **[결론]** 수소법원은 영수증에 대하여는 청구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 판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는 본안판결을 하여야 함.

- OX 퀴즈를 통해 쟁점을 잡는 감각을 키웁니다.

II. 사물관할과 소가3)

1.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2.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6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금전적인 값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4. 소가가 2억 원인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쟁점이 복잡하고 선례가 없어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합의부)이 결정하면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다.
5. 사물관할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 법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 이익(소가)은 피고가 응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 금액이 6억 원이 되었다면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강의 진도표

주차	수업 내용
1	법원과 당사자
2	소송요건과 소송물
3	동일소송의 법리
4	변론
5	증거, 소송의 종료
6	청구의 병합
7	공동소송, 참가
8	상소, 재심, 특수형태소송

※ 세부 일정은 진도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사 개인 e-mail : ljhcpla@gmail.com
- 카카오톡 ID : **fatcat (카카오톡 피드백이 조금 더 빠릅니다)**
- 수험 블로그 : ljhcpla.tistory.com